

한국체육대학교 상조회규약

제정 1981. 11. 01.

제11차 개정 2006. 7. 10.

제12차 개정 2010. 6. 02.

제13차 개정 2012. 6. 06.

제 1조(명칭) 본 회의는 한국체육대학교 상조회(이하“본회”라 칭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(목적) 본 회의는 교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통한 인화와 단결을 도모하고 경·조사 등에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명량하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한국체육대학교내(총무과)에 둔다.

제 4조(자격) 본 회의 회원 자격은 한국체육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으로서 최초 가입시 입회비(10,000원)를 납부하고, 매월 월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
제 5조(회원의 자격상실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1. 당연탈퇴 : 정년퇴직, 면직, 전출,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
2. 의원탈퇴 : 회원 본인이 탈퇴서를 제출한 때. 다만, 의원 탈퇴 하였을 시는 재가입을 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며,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송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6조(재원) 본 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익년도 4월 30일까지로 정한다.

1. 회 비
2. 기 부 금
3. 입 회 비
4. 기타수입

제 7조(회비납부) 회원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10,000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조(사업) 본 회의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회원에 대한 상조비 지급
2. 회원을 위한 후생사업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 9조(상조비 지급) ① 제8조 제1호에 의한 상조비 지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다만, 상조비 지급 사유 발생시기는 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하되 공부상 기록을 원칙으로 한다.

1. 결 혼

본인 : 300,000원

자녀 : 300,000원

2. 회 갑

본인 : 300,000원

3. 사 망

본인 및 배우자 : 1,000,000원과 조기(조화)

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: 500,000원과 조기(조화)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: 조화

(단, 조화는 100,000원 상당)

4. 병 고

본인 및 배우자 : 2주 이상 입원 치료 200,000원

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: 2주 이상 입원 치료 150,000원

단, 본인은 횡수제한 없이 지급하고, 배우자, 자녀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는 연1회(회계년도 기준)에 한하며, 입원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입원기간이 2주 미만이라도 상조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.

5. 간사 및 간사보조자의 출납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경조비 지급에 있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 또는 어구해석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한다.

③ 모든 상조비의 지급시효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, 상조비의 지급은 본인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. 단, 본인회갑은 공부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집행부에서 자동 지급한다.

제10조(상조비지급의 특례) 상조비를 인상 지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대부) 본 회의 회비 적립금이 일정액 이상을 초과하면 회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, 대부상한액은 10년 이상 근무자는 5,000,000원, 10년 미만 근무자는 3,000,000원 이내로 이자율은 월 0.4%로 한다.

제12조(송별금 지급)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송별금을 지급하되, 10년 이상 근무자는 200,000원, 20년 이상 근무자는 400,000원, 30년 이상 근무자는 600,000원의 근속가산금을 추가하여 지급한다.

근속연수 × 30,000원 (단, 산출단위는 6월이상으로 한다.)

제13조(위로금지급) ① 7년동안 제9조(상조비지급)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위로금 100,000원을 지급한다.

② 지급기준은 연도를 기준하며 상조비 지급이 이루어진 익년도 부터 기산하여 7년이 도달한 해의 5월에 지급한다.

제14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2. 규약 개폐에 관한 사항
3. 상조비 인상 지급 심의에 관한 사항
4.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5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격년별로 5월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제16조(의결) 총회는 회장의 발의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7조(임원) ① 본 회의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| | | | |
|--------|----|----------|----|
| 1. 회 장 | 1인 | 2. 부 회 장 | 1인 |
| 3. 감 사 | 2인 | 4. 간 사 | 1인 |

②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.

③ 본 회의 회장은 교학처장, 부회장은 총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정리하고, 부회장은 회장을 보조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(삭 제)

⑤ 감사는 총회에서 2명(교원 1명, 일반직 1명)을 선출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⑥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한다.

⑦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장을 고문으로 추대한다.

제18조(소위원회 구성)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.

① 소위원회의 위원구성은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감사)과, 교원3명, 일반직(기능직포함)3명으로 한다.

② 소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소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 할 수 있다.

⑤ 소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경조비지급 심의, 정기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,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.

제19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약 시행후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조비 지급이 본회 재정상으로 전액 지급할 수 없는 경우는 부족액이 충당하도록 회원 봉급에서 균등한 비율로 각출한다.

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 기간은 본 규약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4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경과조치) 13조(위로금지급) 규정에 의한 최초위로금은 98년도에 지급한다.
(92년이후 상조비 미수혜자)

② 이 규약은 199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99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03. 5. 20.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약 개정당시 회장의 임기는 2004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약은 2005. 5. 2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06. 5. 15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06. 7. 10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10. 6. 2.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12. 6. 6.부터 시행한다.